

의안번호	2211312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계번호	25D3619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9억 8,000만원, 2029년 167억 1,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688억원(연평균 172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6,317	6,469	6,624	6,218	25,628	6,407
기본경비	6,493	6,649	6,809	6,391	26,342	6,585
사업비	4,170	4,270	4,373	4,105	16,918	4,229
합계	16,980	17,388	17,806	16,714	68,888	17,221

주: 본 추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이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조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의 유해(이하 “유해”라 함)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의 살아있을 당시의 신원과 그 가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5조(조사기간)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간(현행 3년간)으로 연장하고(제1항), 그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3년(현행 1년) 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4조의2(진실규명 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4항)	의무규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5	안 제34조의4(보상금)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진실규명결정사건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의무규정
6	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법률 제00000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함)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7	안 제34조의8(재심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또는 진실규명결정사건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의무규정
10	안 제40조의2(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1	안 제43조의4(손실보상)	위원회는 타인에게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	
2	안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	
3	안 제25조(조사기간)	○	
4	안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 심의위원회)	×	
5	안 제34조의4(보상금)	×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6	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	
7	안 제34조의8(재심의)	×	
8	안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	
9	안 제34조의16(소멸시효)	×	
10	안 제40조의2(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	
11	안 제43조의4(손실보상)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존속기한은 최대 2025년 11월 26일까지임

○ 현행법 제25조¹⁾는 위원회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활동을 하되, 그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2021.5.27.)과 진상규명활동(3년)을 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1년)하였는데, 그 기한이 2025년 5월 26일까지임

1)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 현행법 제32조²⁾는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대 2025년 11월 26일임
- 조사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연장기간 1년 포함)에서 8년(연장기간 3년 포함)으로 연장하면서 2025년 12월 1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3기 위원회”라 함)를 시작하려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이 준비기간을 거쳐 동 개정안 시행일(2025.12.1.)에 모두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는 現 위원회의 예산내역, 정원, 보수지급방식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을 반영하여 3기 위원회의 추가 재정소요를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現 위원회 정원: 136명(위원회가 보수 지급 81명, 원소속기관이 보수 지급 55명)
- 現 인건비 편성: 정원 내 81명, 정원 외 임기제 공무원 26명 등 총 107명
- 인력증원: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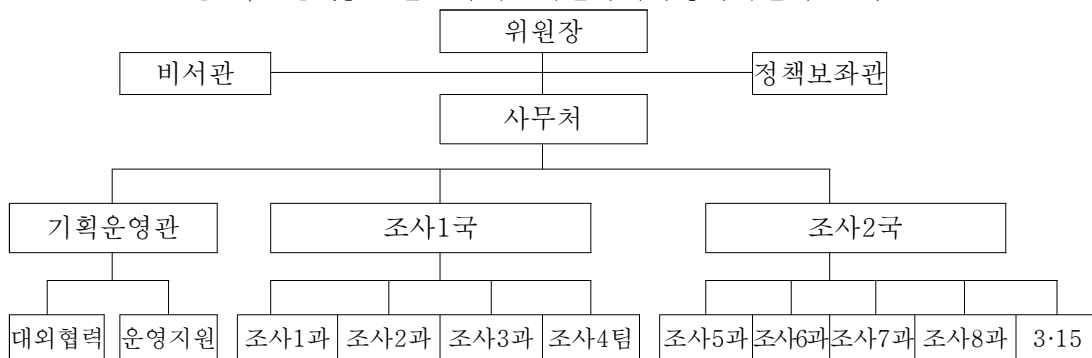
[표 2]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내역: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인건비	5,251	6,094	6,520	6,811	6,169
기본경비	5,924	5,954	6,800	6,686	6,341
사업비	2,566	7,029	3,429	3,266	4,073
합계	13,741	19,077	16,749	16,763	16,583

주: 2020년과 2021년은 인력과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1]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직도



2)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은(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 유형(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피해 정도, 피해 당시의 연령, 피해 시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정보가 없어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추계에서 3기 위원회의 인건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³⁾을 적용하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인건비 대비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위원회 소관 예산이 12월 31일까지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으로 함
 - 개정안에 따른 3기 위원회 조사기한은 최대 2029년 5월 26일(연장기간 포함)이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존속기한(6개월)은 2029년 11월 26일까지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3기 위원회의 인건비는 現 위원회의 인건비 평균액(2022~2025년)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現 위원회의 최근 4년간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평균액과 인건비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음

3)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의 평균액: 2022~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대비 비중	세부사업	합계
인건비	—	(진화위 인건비) 6,169	16,583
기본경비	102.8%	(진화위 기본경비) 6,341	
사업비	66.0%	(진화위 운영) 4,073	

주: 기본경비에는 사무보조 인력(기간제 근로자 2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現 위원회 인건비(정원 내 81명, 정원 외 26명)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3기 위원회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음

[표 4] 3기 위원회 인건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6,317	6,469	6,624	6,218	25,628

주: 2028년은 제3기 위원회의 존속기한(2029.11.26.)을 고려하여 11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및 사업비

- 3기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최근 4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102.8%)과 사업비 비중(66.0%)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연도별 인건비에 각각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한 3기 위원회의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표 5] 3기 위원회 기본경비와 사업비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비중 (인건비 대비)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본경비	102.8%	6,493	6,649	6,809	6,391	26,342
사업비	66.0%	4,170	4,270	4,373	4,105	16,9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9억 8,000만원, 2029년 167억 1,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688억원(연평균 172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6,317	6,469	6,624	6,218	25,628	6,407
기본경비	6,493	6,649	6,809	6,391	26,342	6,585
사업비	4,170	4,270	4,373	4,105	16,918	4,229
합계	16,980	17,388	17,806	16,714	68,888	17,221

주: 본 추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이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